문의 1577-9880

www.skcn.co.kr

SK 건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SK VIEW

360° 프리미엄 라이프!

청라 A31블럭 SK VIEW

공 / 급 / 안 / 내

인천 청라지구 A-31BL 청라 SK VIEW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면차·지역으로 학교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입주시점에 인접학교 외중·고등학교는 사구내 학교)로 취학할 수 있으며, 현 토지이용계획도의 학교용지는 위치 및 종류 등이 변경(폐지 포함)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문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6962호 (2009. 05. 28)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 서구 청라지구 A-31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24~30층 9개동 총 879세대[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17세대, 3자녀 특별공급 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 공동주택 57,608.9453㎡, 근린생활시설 622.0547㎡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위 : ㎡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장애 자유구역	3자녀 특별공급	일반분양 세대수	층별 세대수	층별 구분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1회(10%) 2019.10.16	2회(10%) 2020.12.16	3회(10%) 2020.06.16	4회(10%) 2021.12.16	5회(10%) 2021.04.18	6회(10%) 2021.08.16	잔금(30%) 입주시	비고 (구 주택형 표기)
민영주택	22157-01	2009000295 (01)	101.5882	101.5882	25.4326	127.0208	65.3937	192.4145	58.0760	192	4	6	182	4	1	178,193,541	183,206,459	361,40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108,420,000	127.0208
														4	2	178,193,541	201,906,459	380,10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38,010,000	114,030,000	
														8	3	178,193,541	216,506,459	394,70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39,470,000	118,410,000	
														8	4	178,193,541	233,106,459	411,30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123,390,000	
														8	5	178,193,541	237,206,459	415,40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41,540,000	124,620,000	
														160	6층이상	178,193,541	241,406,459	419,60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125,880,000	
	22157-02	2009000295 (02)	101.6409	101.6409	29.5967	131.2376	65.4275	196.6651	58.1061	92	2	3	87	2	1	178,285,981	195,214,019	373,50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112,050,000	131.2376
														2	2	178,285,981	214,514,019	392,80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117,840,000	
														4	3	178,285,981	229,514,019	407,80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122,340,000	
														4	4	178,285,981	246,714,019	425,0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4	5	178,285,981	251,014,019	429,30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128,790,000	
														76	6층이상	178,285,981	255,214,019	433,50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43,350,000	130,050,000	
	22157-03	2009000295 (03)	115.0253	115.0253	31.5417	146.5670	74.0433	220.6103	65.7577	200	4	6	190	8	1	201,763,251	215,336,749	417,10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125,130,000	146.5670
														8	2	201,763,251	236,836,749	438,70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131,610,000	
														8	3	201,763,251	253,736,749	455,50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45,550,000	136,650,000	
														8	4	201,763,251	272,936,749	474,70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47,470,000	142,410,000	
														8	5	201,763,251	277,736,749	479,50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47,950,000	143,850,000	
														160	6층이상	201,763,251	282,436,749	484,20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48,420,000	145,260,000	
	22157-04	2009000295 (04)	114.3812	114.3812	32.1056	146.4868	73.6287	220.1155	65.3895	84	1	2	81	3	3	200,633,450	254,566,550	455,200,000	45,520,000	45,520,000	45,520,000	45,520,000	45,520,000	45,520,000	45,520,000	136,560,000	146.4868
														3	4	200,633,450	273,666,550	474,30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142,290,000	
														3	5	200,633,450	278,466,550	479,10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143,730,000	
														75	6층이상	200,633,450	283,266,550	483,90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48,390,000	145,170,000	
	22157-05	2009000295 (05)	116.8673	116.8673	35.1505	152.0178	75.2291	227.2469	66.8107	44	1	1	42	2	3	204,984,261	267,405,739	472,40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141,720,000	152.0178
														2	4	204,984,261	287,305,739	492,30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49,230,000	147,690,000	
														2	5	204,984,261	292,305,739	497,30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49,730,000	149,190,000	
														38	6층이상	204,984,261	297,205,739	502,20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50,220,000	150,660,000	
	22157-06	2009000295 (06)	125.4899	125.4899	33.4059	158.8958	80.7795	239.6753	71.7401	90	2	3	85	2	1	220,118,967	241,981,033	462,10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138,630,000	158.8958
														2	2	220,118,967	265,881,033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2	3	220,118,967	284,381,033	504,50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151,350,000	
														2	4	220,118,967	305,681,033	525,80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157,740,000	
														2	5	220,118,967	310,981,033	531,10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159,330,000	
														50	6층이상	220,118,967	316,281,033	536,40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160,920,000	
														1	1	220,118,967	244,681,033	464,80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46,480,000	139,440,000	
														1	2	220,118,967	268,681,033	488,80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48,880,000	146,640,000	
														1	3	220,118,967	287,381,033	507,500,000	50,750,000	50,750,000	50,750,000	50,750,000	50,750,000	50,750,000	50,750,000	152,250,000	
														1	4	220,118,967	308,781,033	528,90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158,670,000	
														1	5	220,118,967	314,181,033	534,300,000	53,430,000	53,430,000	53,430,000	53,430,000	53,430,000	53,430,000	53,430,000	160,290,000	
														25	6층이상	220,118,967	319,481,033	539,60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161,880,000	
	22157-07	2009000295 (07)	126.7750	126.7750	34.4762	161.2512	81.6068	242.8580	72.4748	90	2	3	85	3	1	222,373,132	256,726,868	479,10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47,910,000	143,730,000	161,2512
														3	2	222,373,132	281,526,868	503,90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50,390,000	151,170,000	
														3	3	222,373,132	300,826,868	523,20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52,320,000	156,960,000	
														3	4	222,373,132	322,826,868	545,20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54,520,000	163,560,000	
														3	5	222,373,132	328,326,868	550,70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55,070,000	165,210,000	
														75	6층이상	222,373,132	333,826,868	556,20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166,860,000	
	22157-08	2009000295 (08)	128.7778	128.7778	32.9747	161.7525	82.8960	244.6485	73.6197	84	1	2	81	3	1	225,886,197	254,713,803	480,600,000	48,060,000	48,060,000	48,060,000	48,060,000	48,060,000	48,060,000	48,060,000	144,180,000	161,7525
														3	2	225,886,197	279,513,803	505,400,000	50,540,000	50,540,000	50,540,000	50,540,000	50,540,000	50,540,000	50,540,000	151,620,000	
														3	3	225,886,197	298,913,803	524,800,000	52,480,000	52,480,000	52,480,000	52,480,000	52,480,000	52,480,000	52,480,000	157,440,000	
														3	4	225,886,197	321,013,803	546,90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164,070,000	
														3	5	225,886,197	326,513,803	552,400,000	55,240,000	55,240,000	55,240,000	55,240,000	55,240,000	55,240,000	55,240,000	165,720,000	
														69	6층이상	225,886,197	332,013,803	557,900,000	55,790,000	55,790,000	55,790,000	55,790,000	55,790,000	55,790,000	55,790,000	167,370,000	
	22157-09	2009000295 (09)	212.9522	212.9522	59.8446	272.7968	137.0803	409.8771	121.7406	3	0	0	3	3	29	373,534,590	567,265,410	940,800,000	94,080,000	94,080,000	94,080,000	94,080,000	94,080,000	94,080,000	94,080,000	282,240,000	272.7968

※2009.4.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하여 표기함.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층급액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충액 범위 내에서 당사에서 향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세대별 공급금액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안내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9.4.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니스옵션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발코니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담비율을 제외한다음 50% 이상이 투입되고, 등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해당입주지정서 교부시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대출미신청자 또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시 입주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부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단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나머지 금액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자는 관계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정 아파트는 전용 85㎡초과 민영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최초주택공급 계약체결일) 기준일 날로부터 1년간 금지 및 당첨된 지역 내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간 타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신청할 수 없음(단, 20개년 3월기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제다청약은 적용이 유예에 유의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시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의해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소수층(1층 단수조정)로 동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전 특장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신청세대 조행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9. 06. 02.(화) (10:00~15:00) / 당사 견본주택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4항) 2. 3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9. 06. 02.(화) (15:30) / 당사 견본주택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추첨소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3자녀 특별공급 순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 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자의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나 혹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은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총 17세대)

주택형(주거전용면적㎡)	101.5882	101.6409	116.0253	114.3812	116.8673	125.4899	126.7750	128.7778	212.9522	계
세대수	4	2	4	1	1	2	2	1	0	17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23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기업의 종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07-2928호, 2007. 11. 9)의 내용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당해지구 소재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당해지구에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단해지구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 불포함
  나. 종사자 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학국 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개설된 학교를 말한다.
  라. 의료기관 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마. 교육기관 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개설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바. 무주택세대주 라 함은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1년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은 국내 무주택자를 말한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세대 유의사항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8조 입주자격상실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계약자는 등기이전 완료 전까지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시켜, 퇴직 등한 자는 분양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에 반납하고 사업주체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함.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4조, 제5조, 제6조 에 의거 청약접수자는 청약접수 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주택특별공급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해지되므로 접수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추첨 당첨자는 본 입주자 모집 계약부터의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간주되며, 특별공급에 있어서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접수하고, 동호수 추첨일 이후 당사에서 당첨자의 청약접수시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추천서를 요청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해서 추천서를 발급하며, 추천서를 발급 받으신 분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동호수 추첨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해당 특별공급의 경쟁이 있을 경우, 외국인에게 우선 공급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10조에 의거)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외국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외국인 등록증(사실증명서) • 국내기상소인사실증명서(인천지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여권 및 비자(외국인) •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증명서(1년 이상) • 재직증명서 • 인감(조합인감증명서 제출지에 한함)
내국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 등 - 주민등록등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증명서(1년 이상)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포함 등은 당사 모델하우스에서 2009. 06. 28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증명서 원도본은 발급시 원도를 가져와야 일치 공증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가져와야 제출하기 바랍니다.

3) 3자녀 특별공급 [건설량의 3% 범위 내]

- 3자녀 특별공급세대

주택형(주거전용면적㎡)		101.5882	101.6409	115.0253	114.3812	116.8673	125.4899	126.7750	128.7778	212.9522	계
세대수	인천광역시	3	1	3	1	0	2	2	1	0	13
	경기도 및 서울시	3	2	3	1	1	1	1	1	0	13
	합계	6	3	6	2	1	3	3	2	0	26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05. 29)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합니다.
- 청약예금 가입기간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제외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만혼상 미성년자인만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입양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3자녀특별공급 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구비율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인구비율등록제정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26%,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24%로 공급합니다.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9. 06. 02.(화) (10:00~15:00) / 당사 견본주택**
- **동·호수 추첨 일시 및 장소 : 2009. 06. 02.(화) (15:30) / 당사 견본주택**(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평점요소		점수	배점기준	점수	비 고
계		100			-
자녀수 (1)	미성년 자 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인정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시·도 거주 기간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이상 ~ 10년 미만	15	
			1년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으로 확인, (3)국토해양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공 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당사 견본 주택에 비치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장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파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않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 1통(이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위임용)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제이동등)는 국내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4)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06. 29)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중복청약시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하며,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2건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사항		국민은행(국민은행에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인터넷 청약 → 당첨확인
	이용기간	2009. 06. 11 ~ 2009. 06. 20 (10일간)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른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청약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시비스코드 : 701]	전국금융공동망(1369) [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2009. 06. 11 ~ 2009. 06. 20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9. 06. 11 (08 : 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09. 06. 16(화) ~ 2009. 06. 18(목) (3일간, 09:00~16:00,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키로 함)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 청라 SK VIEW 아파트 견본주택
• 문의전화 : 1577-9880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은행	납부계좌	예금주
국민은행	393301-04-002042	KB부동산신탁(주)

• 납부시기 :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은행 본 · 지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 비 사 항
공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가주지역, 기정청약제외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 1통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합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상기 제출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문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해양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로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모두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된 아파트는 취소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 및 당첨자 관리가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을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 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천광역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주택법 제 39조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7조에 준합니다.

▣ 입주자 융자지원 내용

• 본 아파트는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이 가능합니다.

구 분	융자기관	비 고
금융기관	국민은행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고지함

• 중도금대출 및 중도금대출 연계 모기지론 이용시 발생하는 인지대 · 보증수수료 등 대출취급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대출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개시 예정일 : 2012년 1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 점검 실시
– 당사는 입주개시전에 입주자 여러분이 직접 하자여부를 사전점검 하시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 사전점검에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사전점검일 이전에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가점제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 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비고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 · 제5항 · 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주택공급규칙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재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구 호적등본)에 혼인신고 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다만,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가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3)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규칙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해당됩니다.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12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 '60㎡ 이하이며, 5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 · 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0㎡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 보유 특례)
① (현재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계속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 · 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3항 제3호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창호	목재문(문틀, 포켓도어 포함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재문 가틀(사출 및 욕실문 하부씰 포함),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방화문
바닥재	바닥재(마루판,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	바닥난방 + 시멘트 몰탈 (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래핑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화장대(상판및거울포함), 침실붙박이장, 드레스룸장(도어포함), 발코니선반류	콘크리트 벽체 위 초배지 마감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정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정도장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 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욕실매입등	매입등(욕실매입등 제외), 배선 기구류 (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바디샤워기,수전 등), 샤워부스, 코너선반, 욕실액세서리,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 욕실환풍기, 욕실스피커폰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기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주방 액정TV, 가스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빌트인냉장냉동고 리프트업도어(10단,588Z, 10단,640Zm*항 이상제), 주방가전 일체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배기덕트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기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101.5882	101.6409	115.0253	114.3812	116.8673	125.4899	126.7750	128.7778	212.9522	비고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23,797,000	24,587,000	27,041,000	27,026,000	28,047,000	28,791,000	29,218,000	29,309,000	49,430,000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상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 저촉 기한 구분만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마감재 제외)과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 (PVC 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인 온돌마루 시공은 가능하나 타자재(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확장범위는 확정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101.5882	101.6409	115.0253	114.3812	116.8673	125.4899	126.7750	128.7778	212.9522	비고
발코니확장공사비	8,965,000	10,376,000	10,651,000	10,928,000	10,619,000	11,460,000	13,714,000	12,613,000	10,725,000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확장 세대의 기본품목을 감한 가격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 비용은 발코니 사시 금액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확장부분에는 이중창이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사항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의 [주택형] 또는 [평]은 평형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시공평주택형㎡]로 기재하여 붙이우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신청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신청 착오로 인한 피해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자축에서 청약해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적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은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3순위 공칭 당첨자 포함)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주택이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1개 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자 본인이 2건 이상 청약 시 이중 청약 처리되어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한함)
•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재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은 자 제외)는 분양주택의 입주 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는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계약시 [외국인 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시행인가 내용과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과 견본주택(실물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사업승인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시공제품은 계약자용 인쇄물(카탈로그)과 견본주택(실물세대)내에 시공된 제품은 실제 시공시 동급(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국토해양부 주관 30145-26905)에 의거 임의로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 계약 시 모델하우스 및 분양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실 대지 측량에 의한 설계변경, 기타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동의합니다.
- 주동 입면 및 색채, 조경, 경관부분에서 추후 토지공사의 경관상세계획에 의거 공사 중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평면구조의 기변성을 위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되어, 세대내 실간벽체는 경량벽체, 발코니-실간분합벽은 조적벽으로 시공되오나 일반 벽식구조 아파트와 비교하여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클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교통시설물 및 계획안은 블록별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지구전체 교통영향평가 내용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조경 수목의 수량, 수종, 각종 시설물, 포장 등은 향후 계획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동측 호수공원은 토지공사의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이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안 및 착공, 준공일정은 토지공사에 문의)
- 청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대지 북서/북동측 가각부 공개공지, 북측에 동서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모델하우스 내 모형 및 배치도에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내에 자동크린넷 쓰레기집하장, 보도육교, 오수중계펌프장, 종교시설, 주유소, 수질정화시설, 전기공급설비(변전소, 한국전력공사 시행), 열공급설비(지역난방, 청라에너지㈜ 시행) 및 도시가스 지역정압기(인천도시가스㈜) 시행)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라지구 인접지역에 각종 유해시설(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서부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홍보카다록,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청라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자체,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 쓰레기 이송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실제 시공시 쓰레기 투입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 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세대의 경우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 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 동측 완충녹지지역의 식재계획은 해당관청 및 토지공사의 지구단위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분양자료(카다로그 CG, 모형)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옥내 주민운동시설, 문고,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경비실)은 지하1층(데크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주민자치실, 북카페, 독서실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운동시설은 향후 운영계획에 따라 진출입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05동, 108동 인근의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해당 동 세대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 105동과 106동 사이, 107동과 108동 사이의 주민운동시설로 인하여 해당 동 세대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6동 지하에 우수저류조가 위치합니다.
- 101동 4호라인, 102동 3,4호라인 전면, 104동 4호라인 측면, 106동 1,2호라인 전면, 107동 1,2호 라인 전면, 109동 2호라인 전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소가 설치됩니다.
- 101동, 103동, 107동 인근에는 D.A가 설치됩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인근에는 천창이 설치됩니다.
- 103동과 104동 사이, 106동과 107동 사이에는 단지 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동의 1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접한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4동, 105동 전면의 지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지 내 북측 및 서측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됩니다.

▣ 주택성능등급 인정 항목별 등급표

성능분야	성능범주	성능항목	성능등급 (1~4등급)
소음		경량충격음	4등급
		중량충격음	4등급
		화장실소음	2등급
		경계소음	1등급
구조	가변성		2등급
	수리용이성	전용부문	4등급
		공용부문	4등급
	내구성		3등급
환경	조경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3등급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4등급
		일조(및 환경)	3등급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1등급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2등급
		에너지성능(열환경)	2등급
생활환경	교통시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1등급
		전용부문	3등급
		공용부문	3등급
화재·소방	화재·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 설비	3등급
		배연 및 피난 설비	3등급
		내화 성능	3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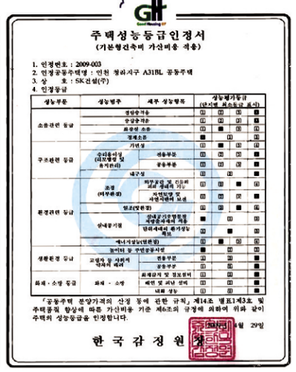
주택성능등급인정서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적용)

1. 인정번호 : 2009-003
2. 인정공동주택명 : 인천 청라지구 A31BL 공동주택
3. 상 호 : SK건설(주)
4. 인정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순히 최소등급 표시)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4
	중량충격음		4
	화장실 소음		2
	경계소음		1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2
	수리용이성	전용부문	4
		공용부문	4
	내구성		3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3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4
	일조(및 환경)		3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1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2
	에너지성능(열환경)		2
생활환경 등급	교통약자 및 고령자 등의 배려 여부	놀이터 및 주민공동시설	1
		전용부문	3
		공용부문	3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
		배연 및 피난 설비	3
		내화 성능	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별표1제3호 및 주택공급 방식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의 성능등급을 인정합니다.

2009년 2월 27일

한 국 감 정 원 장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38조의2 제 4항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항 목		공 종	금 액	비 고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137,742,997	
		기간이자	9,416,241	
		필요적 경비	7,883,437	
		그 밖의 비용	17,633,921	
	계		172,676,596	
공사비	토목	토공사	3,103,777	
		흙막이공사비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501,010	
		석축공사		
		우 · 오수공사	1,888,263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422,093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5,953,951	
		부대시설공사	476,316	
	소계		12,345,410	
	건축	공통가설공사	5,968,633	
		가시설물공사	3,878,314	
		지정 및 기초공사	2,030,172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72,492,876	
		용접공사		
		조적공사	2,404,134	
		미장공사	6,851,979	
		단열공사	779,408	
		방수 · 방습공사	3,130,215	
		목공사	2,518,280	
		가구공사	10,212,458	
		금속공사	3,457,927	
		지붕 및 홈통공사	815,197	
		창호공사	9,627,262	
		유리공사	3,012,098	
		타일공사	9,836,504	
		돌공사	4,022,620	
		도장공사	3,437,070	
		도배공사	4,501,255	
		수장공사	2,392,053	
		주방용구공사	3,941,587	
		집공사	3,198,903	
	소계		158,507,944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기	3,075,522	
		급탕설비공사	675,666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2,197,612	
		위생기구공사	4,243,809	
		승강기계공사	3,066,285	
		난방비공사	3,165,719	
		가스설비공사	1,369,409	
		자동제어설비공사	154,803	
		특수설비공사	4,195,987	
	소계		22,144,812	
	그 밖의 공종	전기	13,604,778	
		정보통신	5,060,858	
		소방설비	10,038,953	
	소계		28,704,589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5,282,976	
		이윤	3,344,921	
	소계		8,627,897	
계			230,330,652	
간접공사비		설계비	1,650,000	
		감리비	3,624,730	
		일반분양사설 경비(M/H 건립비)	3,816,400	
		분담금 및 부담금	4,083,812	한전, 가스, 수도, 오수, 학교용지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계			13,174,942	
그 밖의 비용(기분형 건축비 가산비용)			7,862,310	
계			7,862,310	
합계			424,044,5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감리자명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건축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2,858,581,461
전기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587,288,566
통신	석우엔지니어링(주)	49,500,000
소방	한방유비스(주)	129,360,000

▣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주)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820009-101-0002200	296,831,15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 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시행자 : KB부동산신탁(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1348237)

▣ 시공자 : SK건설(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0038805)

▣ 설계자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번호 : 서울시 강남구-건축사사무소-253)

▣ 견본주택 위치 : 청라 SK VIEW 아파트 견본주택(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

※ 사이버 견본주택 : WWW.SKCN.CO.KR

▣ 분양문의 : 견본주택(TEL : 1577-988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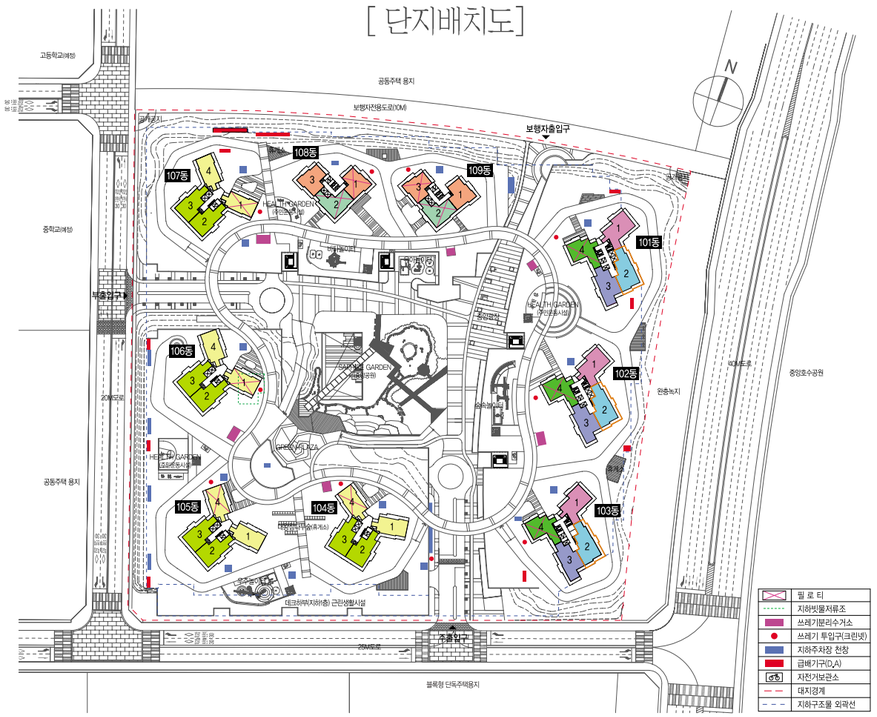
N
고등학교예정
공동주택 용지
보행자전용도로(10M)
보행자출입구
107동
108동
109동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HEALTH GARDEN
GREEN PLAZA
THEME GARDEN
중앙호수공원
완충녹지
공동주택 용지
주출입구
블록별 단독주택용지
중학교예정
20M도로
25M도로
D.A
천창
데크층(주차장층)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

101.5882㎡
(구 127형) 192세대

- 전 용 면 적 : 101.5882㎡
- 주 거 공 용 면 적 : 25.4326㎡
- 공 급 면 적 : 127.0208㎡
- 기 타 공 용 면 적 : 65.3937㎡
- 계 약 면 적 : 192.4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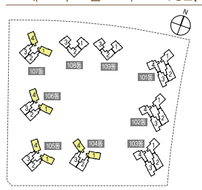

확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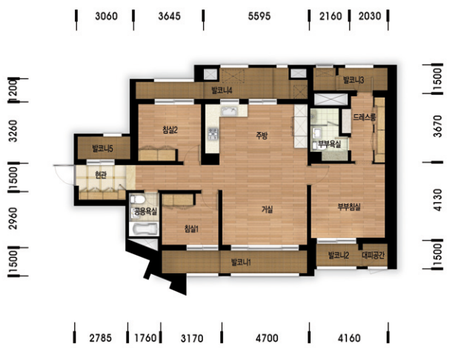

확장후

101.6409㎡
(구 131형) 92세대

- 전 용 면 적 : 101.6409㎡
- 주 거 공 용 면 적 : 29.5967㎡
- 공 급 면 적 : 131.2376㎡
- 기 타 공 용 면 적 : 65.4275㎡
- 계 약 면 적 : 196.6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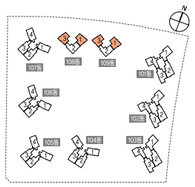

확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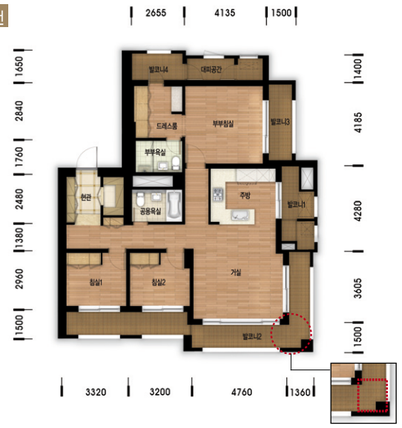

확장후

115.0253㎡
(구 146A형) 200세대

- 전 용 면 적 : 115.0253㎡
- 주 거 공 용 면 적 : 31.5417㎡
- 공 급 면 적 : 146.5670㎡
- 기 타 공 용 면 적 : 74.0433㎡
- 계 약 면 적 : 220.6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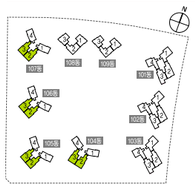

확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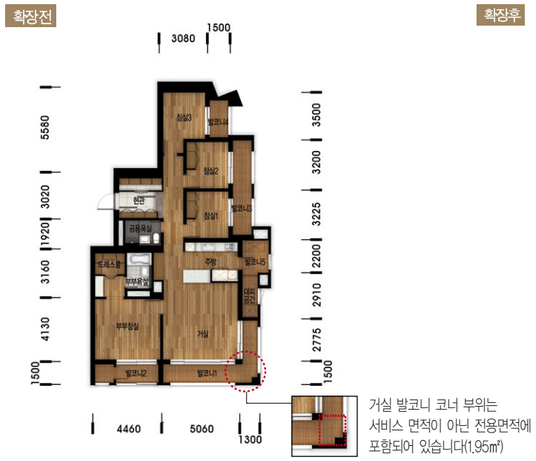

확장후

114.3812㎡
(구 146B형) 84세대

- 전 용 면 적 : 114.3812㎡
- 주 거 공 용 면 적 : 32.1056㎡
- 공 급 면 적 : 146.4868㎡
- 기 타 공 용 면 적 : 73.6287㎡
- 계 약 면 적 : 220.1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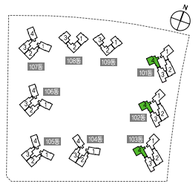

확장전

확장후

116.8673㎡
(구 152형) 44세대

- 전 용 면 적 : 116.8673㎡
- 주 거 공 용 면 적 : 35.1505㎡
- 공 급 면 적 : 152.0178㎡
- 기 타 공 용 면 적 : 75.2291㎡
- 계 약 면 적 : 227.2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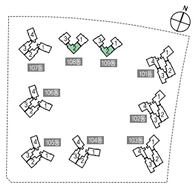

확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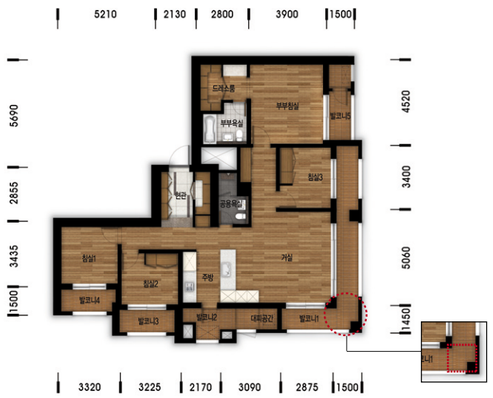

확장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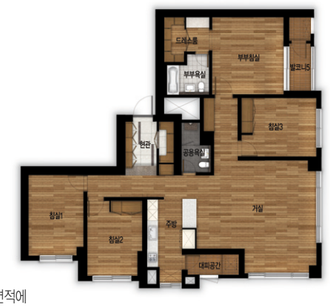

※ 인접 세대 및 인접실은 발코니 확장 계약 여부에 따라 단열재 추가 시공으로 인해 벽체의 열관류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 면적은 인·허가 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 치수는 안목치수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중심과 발코니 끝선 기준입니다. ※ 주 동의 위치 및 향태에 따라 코어부분은 동일형에서도 사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 및 인접실은 발코니 확장 계약 여부에 따라 단열재 추가 시공으로 인해 벽체의 열관류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 면적은 인·허가 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 치수는 안목치수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중심과 발코니 끝선 기준입니다. ※ 주 동의 위치 및 향태에 따라 코어부분은 동일형에서도 사료 상이할 수 있습니다.

125.4899㎡ (구 158형) 90세대

- 전 용 면 적 : 125.4899㎡
- 주거공용면적 : 33.4059㎡
- 공 급 면 적 : 158.8958㎡
- 기타공용면적 : 80.7795㎡
- 계 약 면 적 : 239.6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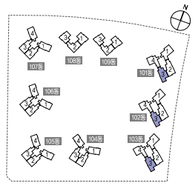

확장전

거실 발코니 코너 부위는
서비스 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025㎡)

확장후

128.7778㎡ (구 161B형) 84세대

- 전 용 면 적 : 128.7778㎡
- 주거공용면적 : 32.9747㎡
- 공 급 면 적 : 161.7525㎡
- 기타공용면적 : 82.8960㎡
- 계 약 면 적 : 244.6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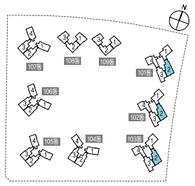

확장전

본 이미지는 1~20층까지 적용된 발코니창호이며
21~28층까지의 거실 발코니창호는 건축심의 의결
조건으로써 외부 난간 없이 시스템창이 기본 설치
되며 확장시에도 동일한 시스템창이 설치됩니다.

거실 발코니 코너 부위는
서비스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10㎡)

확장후

126.7750㎡ (구 161A형) 90세대

- 전 용 면 적 : 126.7750㎡
- 주거공용면적 : 34.4762㎡
- 공 급 면 적 : 161.2512㎡
- 기타공용면적 : 81.6068㎡
- 계 약 면 적 : 242.8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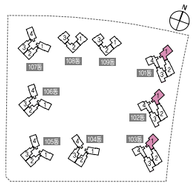

확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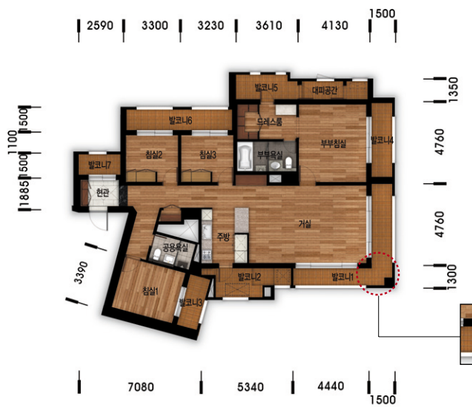

거실 발코니 코너 부위는
서비스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1.95㎡)

확장후

212.9522㎡ (구 272형) 3세대

- 전 용 면 적 : 212.9522㎡
- 주거공용면적 : 59.8446㎡
- 공 급 면 적 : 272.7968㎡
- 기타공용면적 : 137.0803㎡
- 계 약 면 적 : 409.8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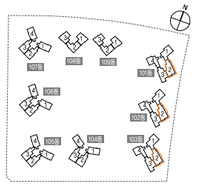

하부층 확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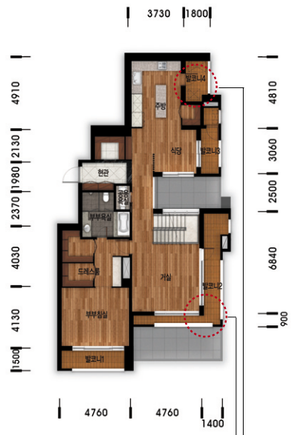

거실 발코니 코너 부위는
서비스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1.26㎡)

하부층 확장후

주방 발코니 부위는
일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2162㎡)

상부층 확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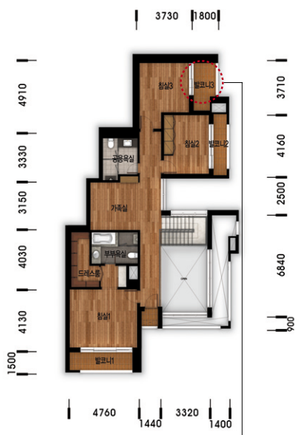

침실 발코니 부위는
일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0.6831㎡)

상부층 확장후

※ 인접 세대 및 인접실은 발코니 확장 계약 여부에 따라 단열재 추가 시공으로 인해 벽체의 일부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 면적은 인·허가 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 치수는 인덕치수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중심과 발코니 끝선 기준입니다. ※ 주 동의 위치 및 향배에 따라 코어부분은 동일형에서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 및 인접실은 발코니 확장 계약 여부에 따라 단열재 추가 시공으로 인해 벽체의 일부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 면적은 인·허가 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 치수는 인덕치수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중심과 발코니 끝선 기준입니다. ※ 주 동의 위치 및 향배에 따라 코어부분은 동일형에서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